

제2725호
2020. 4. 1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
전화: 3396-4955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20-36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2
 제2020-37호 :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3
 제2020-38호 : 세운재향비축단지구 3-1구역 도시정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4
 제2020-39호 : 세운재향비축단지구 3-45구역 도시정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5

● 공 고

제2020-244호 : 세운3-6구역 도시정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7
 제2020-245호 : 세운3-7구역 도시정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 8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	



고 시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36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3-9	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길 23-18	2020. 4. 1.	퇴계로88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	퇴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49	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40	2020. 4. 1	난계로17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6. 30	난계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등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37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도로명주소	지번주소	폐지일자	폐지사유
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40	서울특별시 중구 황학동 1749	2020. 4. 1	건물 말소
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길 23-18	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3-9	2020. 4. 1	건물 철거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38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5호(2019.6.7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호(2015.12.28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4호(2018.3.16.)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5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189-1번지 일대 / 4,729.71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우리자산신탁(주) 대표 이창하 외1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 (삼성동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12월 28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가) 공동주택 종류·세대수 변경 : 공동주택(아파트) 총 390세대 → 총 414세대
 - 변경내용 : 아파트 206세대 및 도시형생활주택·원룸형아파트 208세대 (총24세대 증가)
 - 나) 공동주택 평형별 면적 및 세대수 조정 (※임대주택 변경없음)
 - 다)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연면적 509,6617㎡ 및 1개층 증가(지상26층→27층) 등
 - 라) 사업시행자 명칭 : 국제자산신탁(주) → 우리자산신탁(주) [※법인번호 동일]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주택법 제15조 제6항)

대지 면적	층수	연면적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	
3,711.96 ㎡	지하8층/ 지상27층	52,815.367 ㎡	55.12	910.04	89.98	전용 40㎡미만	24	임대 38 세대
						전용 40㎡이상~ 60㎡미만	390	
						전용 60㎡이상	-	
						총 계	총 414 세대	

- 9. 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- 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. 끝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39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185호(2019.6.7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58,59호(2015.7.30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 되고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24호(2018.3.16.)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8-116호(2018.10.26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4-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2-4번지 일대 / 6,987.24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우리자산신탁(주) 대표 이창하 외1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, 20층 (삼성동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7월 30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가) 공동주택 종류·세대수 변경 : 공동주택(아파트) 총 608세대
 - 변경내용 : 아파트 329세대 및 도시형생활주택·원룸형아파트 279세대
 - 나) 공동주택 평형별 면적 및 세대수 조정 (※임대주택 변경없음)
 - 다) 지상3층 근린생활시설 증축 등 연면적 1,055.9876㎡ 증가 등
 - 라) 사업시행자 명칭 : 국제자산신탁(주) → 우리자산신탁(주) [※법인번호 동일]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주택법 제15조 제6항)

대지 면적	층수	연면적	건폐 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	
5,452.21 ㎡	지하8층/ 지상27층	77,404.7464 ㎡	61.78	938.22	89.93	전용 40㎡미만	4	임대 61 세대
						전용 40㎡이상~ 60㎡미만	604	
						전용 60㎡이상	-	
						총 계	총 608 세대	

9. 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. 끝.

공 고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-244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28호(2016.3.30.)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된 세운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인

세운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1. 공람기간 : 2020. 4. 1 . ~ 2020. 4. 15.(14일간)
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
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입정동 97-4일대
- 시행면적 : 3,851㎡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더센티피제이차 주식회사 대표 박바영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 (역삼동) (☎) 02-2222-5000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72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6. 3. 30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변경사유 : 건축계획의 변경 등
- 변경내용 :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에서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)로 용도변경, 주차계획 및 객실평면, 입면 등 연면적 208.86㎡ 감소 등

4. 관계도서 : 세운 3-6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

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0-245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4-119 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60호(2015.7.30.)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된 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

2020년 4월 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인)

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·공고

1. 공람기간 : 2020. 4. 1 . ~ 2020. 4. 15.(14일간)

2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3)

3. 공람내용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3-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

- 위 치 : 서울시 중구 산림동 275-3일대
- 시행면적 : 2,732.3㎡

다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명 칭 : 더센타씨제이차 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-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 (역삼동) (☎) 02-2222-5000

라. 정비사업 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72개월

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6. 3. 30.

바. 주요 사업시행변경 내용

- 변경사유 : 건축계획의 변경 등
- 변경내용 :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에서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)로 용도변경, 주차계획 및 객실평면, 입면변경 등 연면적 2,352.98㎡ 증가 등

4. 관계도서 : 세운 3-7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공람을 위한 관계도서를

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있으니, 내방하시어 공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공람도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이며, 공람기간 중에 제출되는 의견 및 관계법령의 검토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끝.